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위한
역사단체 공동 학술회의

강제동원의 실상, 판결과 해법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14:00~17:3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ZOOM ID: 812 4060 4006 / PW: 323369

일 정

1부: 성명서 발표 14:00~14:20

사회: 박태균(서울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1. 경과보고

이진한(고려대, 한국사연구회 회장)

2. 성명서 낭독

박홍식(서울대, 역사학회 회장)

2부: 주제 발표 14:20~15:50

사회: 박윤재(경희대,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제1발표

‘모집’이라는 강제: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동원

발표: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제2발표

‘탈식민’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발표: 엄운옥(경희대)

제3발표

강제노동자에 대한 독일의 배상과 보상 정책

발표: 송충기(공주대)

휴식 및 장내정리 15:50~16:00

3부: 종합토론 16:00~17:30

사회: 정병욱(고려대,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상기 발표자

김명환(건국대)

이동기(강원대)

허 은(고려대)

목 차

<성명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 낭독 : 박홍식(서울대, 역사학회 회장) 1

‘모집’이라는 강제: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동원

- 발표문 :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3

‘탈식민’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 발표문 : 염운옥(경희대) 19

강제노동자에 대한 독일의 배상과 보상 정책

- 발표문 : 송충기(공주대) 29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박홍식(서울대, 역사학회 회장) 낭독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한다.

첫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었듯이,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지난 70여년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규명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도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배상안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침략과 강권의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삼일운동과 헌법의 정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둘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력했다. 냉전으로 인해 비록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명시했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팽창정책이 인류 발전에 역행하고 인류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었음을 규정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인류의 희망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평화와 인권을 해친다.

역사학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광복 이후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만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식민지배 책임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회의에서 인종차별, 빈곤과 경제 격차의 기원으로 식민주의가 지적되었으며, 케냐의 ‘마우마우’ 탄압 재판, 인도네시아의 ‘라와게데’ 학살 재판에서 보듯이 국제적으로 식민지배의 책임을 묻고 그 피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이 시작되었다. 이제 ‘탈식민’은 21세기 인류의 공동 과제이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러한 세계의 탈식민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

본 정부와 일본인을 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의 이해와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웃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대의를 환영하며, 과거사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와 배상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는 방안은 아무런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이에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피해 당사자 한 분이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했듯이 후대에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정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현 정부에 전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5일

고려사학회, 도시사학회, 대구사학회, 명청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식민과냉전연구소, 신라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역사교육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와종교아카데미,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국사학회, 의료역사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소, 일본사학회, 전북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냉전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러시아사학회, 한국미국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이상 53개 단체)

‘모집’이라는 강제: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동원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1. 머리말
2. 관의 알선에 의해 ‘모집’당한 노동자들 : 예외적 존재의 노동자들
3. ‘특수 노무자’로서의 노무관리
4. 맺음말

1. 서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확정판결이 났을 때, 아베는 그간 ‘징용공’문제로 부르던 용어를 ‘옛조선반도출신 노동자’로 선언했다. 그간 일본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시기 조선인의 노무동원을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연행이라는 용어는 「이입반도인 연행 주의사항(移入半島人連行心得)¹⁾」처럼 조선인 노동자 모집·도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고, 여기에 강제가 붙게 된 것은 1948년 BC급 전범을 재판한 요코하마(横浜) 재판에서 하나오카(花岡)광업소의 카지마구미(鹿島組)의 중국인 노동자의 연행, 강제노동의 범죄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전시 노무동원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밝힌 용어다. 일본정부는 조선인 노무자에 관해서는 1946년 귀환정책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소위 모집 노동자와 관알선, 징용노동자를 구분하여, 모집 노동자의 경우 자발적인 취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의 귀환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사고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이어졌다.

1990년대 한국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정부는 ‘징용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문제를 ‘징용공’으로 표현하여, 모집과 관알선 노동자를 제외하여 피해의 범주를 좁히고,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는 합법적 동원이었으며, 그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베가 ‘징용공’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옛조선반도출신 노동자’라고 선언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쫓 주장해 왔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는 전제도 부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일본정부의 논리라면, 옛조선반도출신 노동자의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문제라는 점이다. 소위 옛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즉, 조선인 강제연행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재

1) 北炭空知鉱業所、「移入半島人連行心得」, 1940.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자료, 홋카이도대학 도서관 소장

일조선인 학자인 박경식 교수다. 박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1965. 아카시서점)을 저술하면서, 모집노동자도 강제연행의 피해자이며, 전쟁범죄인 중국인의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해서 노무자뿐 아니라, 군인, 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무자비한 전시동원은 식민지 범죄임을 밝혔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역사부정세력과의 전선은 이 ‘모집’노동자에 대한 범죄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일본정부 책임의 문제에 있다. 중국인 강제연행의 전쟁범죄 재판은 당시 미8군 군정재판에서의 판결이 카지마구미(鹿島組)의 개별적인 가혹행위의 폭력성에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²⁾ 강제연행을 일본제국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폭력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졌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진상이 규명되어 왔다.

그러나 식민지민인 조선인의 강제연행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구도 속에 놓여있었다. 식민지민으로서 전쟁에 투입될 때, 일종의 제도적 범주 내에서 제도 속으로의 ‘자발’을 강요당하는 시스템에서 신체적·물리적 폭력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행이라기보다는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위 강제연행, 강제동원의 연구는 모집기 알선기 징용기로 구분해 연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태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세가지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오히려 관의 알선에 의한 ‘모집’의 방법이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944년 8월 전면적 징용령을 내린 후에도 일본정부는 각 회사에 되도록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고 징용을 실시하지 말 것을 중용하였고,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모집 4, 관알선 3, 징용 3의 비율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³⁾

일본정부와 회사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권력을 최대한 이용한 관의 알선에 의한 ‘모집’의 방법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가장 작게 하면서, 회사로서는 모집비용과 동원에 있어서의 직접적 불법을 피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였기 때문에 징용령이 내려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집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은 “모집당했다”는 형용모순을 사용하거나, 혹은 징용령에 의해 징용당한 것이 아니어도 “징용 갔다왔다”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본 발표는 소위 모집 노동자가 어떠한 강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의 알선에 의해 ‘모집’당한 노동자들 : 예외적 존재의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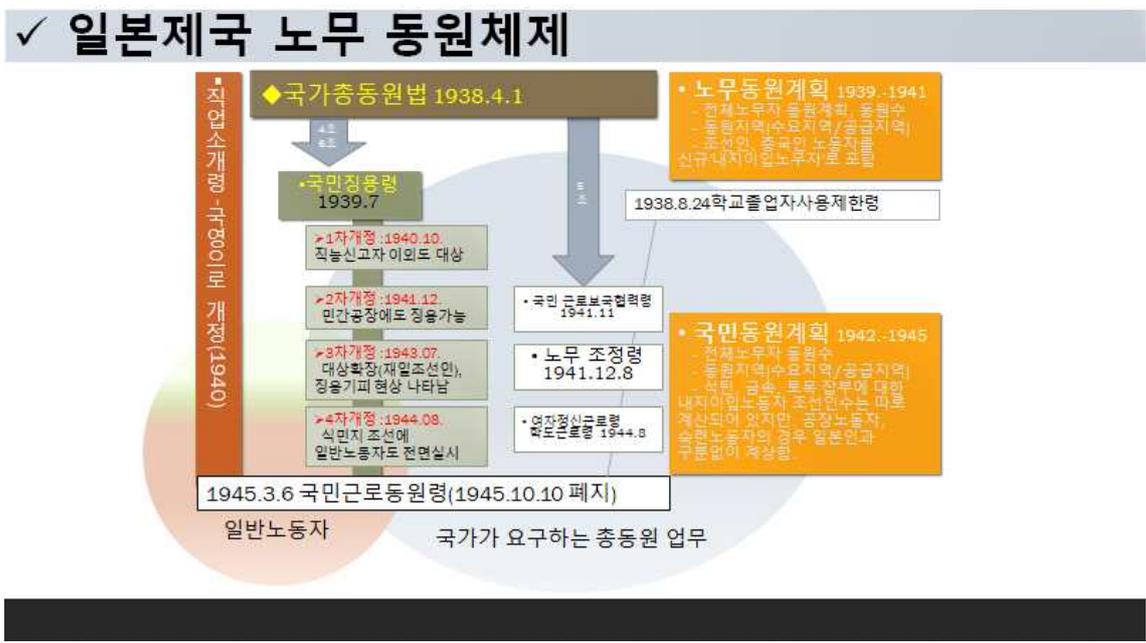
1) 도항정책의 편법적 운용

2) 西成田豊, 『中國人強制連行』, 東京大學出版會, 2002, 6.

3) 徴用令による朝鮮人募集に關する件, 1944.7.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자료, 홋카이도대학 도서관 소장

일본의 전시동원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국가총동원법은 제1차세계대전 시 유럽의 총력전체제의 영향으로 구상되었고, 균질화된 인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업생산량은 자본의 투입으로 기술력의 혁신으로 생산력을 확충한다기보다는 투입된 노동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생산량 확충 계획은 노무자의 동원계획으로 이어졌다.

「국가총동원법」의 제4조(국민의 징용)와 제6조(노무통제)를 근거로한 징용령, 제5조(국가총동원에 대한 국민의 협력)를 근거로한 각종 협력령, 즉 근로정신대, 보국대의 편성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이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5월 조선에서도 발령,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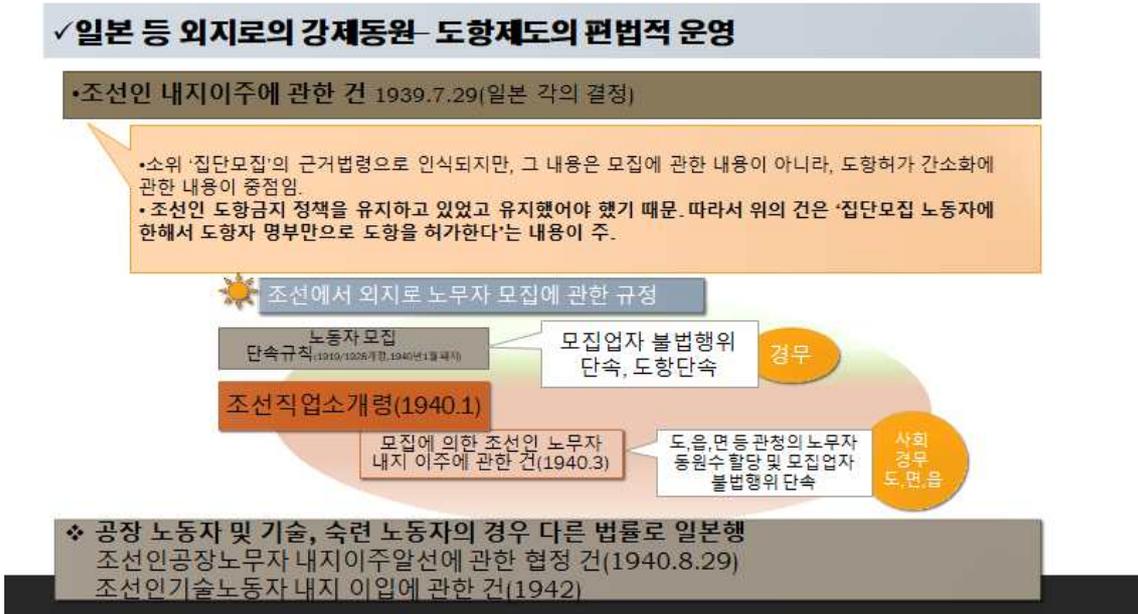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일본의 산업구조를 생산력확충산업과 평시산업으로 나누어, 생산력확충산업은 총동원업무로, 평시산업에 관해서는 노무동원계획을 세워, 노무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본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석탄산, 금속산, 토목건축, 그 외 공장 등 시국 산업에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34년 이후 일본의 전시 경제 호황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내지로의 방만 도향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도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향금지를 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인에게 전면적으로 도향을 허가할 경우, 치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도향금지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계획한 석탄산, 금속산, 토목건축, 그 외 공장에의 취업만을 허락하는 것으로 1939년 7월 29일 후생·내무 양 차관 연명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을 결정했다. 따라서 본 통첩은 도향금지 정책이라는 본래적 정책적 의도와 다른 도향허가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방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작업장 이동방지’, ‘전원 숙사입소 등 숙사 제한’ ‘2년 계약, 연장 불가’등으로 기존 도향정책에 따른 도향조선인

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노동자가 되었다.

2) 조선에서의 노무동원과 모집 규칙



■ 「노동자모집취체규칙」(1918년 1월 府令 제6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으로의 강제연행은 위의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1939년 도 노무동원실시 계획요령」에 따라 1939년 7월 4일 각의 결정되어 시작된 일련의 행정 조치에 의한 노동력 동원을 말한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1939년 7월 29일 후생, 내무 양 차관 연명에 의한 「조선인노동자내지이주에 관한 건」,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 입에 관한 방침」이라는 것은 도항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선내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는 근거법은 1918년 1월 府令 제6호 「노동자모집취체규칙」으로 실무 적인 절차를 행한다. 이 규칙은 조선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모집하려고하는 자가 조선의 모집 대상지역 경무부장 및 도의 허가를 받아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1928년 9월 개정되어 조선 내에서의 노동자 모집에서도 적용되어, 조선에서의 모든 노무자 모집은 총독부 허가제로 개정되었다. 「노동자모집취체규칙」 그 자체는 조선인들을 취업시키는 합법적인 수단이었으나, 실행에 있어서 업자의 관 과의 유착, 유력자를 통한 알선, 취업조건 및 대우의 상이,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상황 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작업기피 및 도망을 하게 하는 기제가 되었다.

1939년 7월 발령된 징용령의 제2조에서는 “징용은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 경우 외 직 업소개소의 직업소개 그 외 모집의 방법에 의해 소요 인원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서 그것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발령하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직

업소개소의 소개, 혹은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1940년 직업소개소법을 개정하여 국가직업소개소를 만들어 직업소개소를 사용하여 동원을 하게 했다.

1940년 1월 11일 조선총독부는 노동자모집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조선직업소개령」을 실시하였다. “「조선직업소개령 실시에 관한 건」에서 직업소개 종류를 구분하게 하였는데, ‘나라(國)가 행하는 노동자 모집에 대해 편의상 본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지만, 도(道)에서 행하는 노동자 모집에 관해서도 위에 준해 운용’⁴⁾하기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나라’가 하는 노동력 동원으로는 「道알선」과 「총독부알선」, 그리고 **조선 외로의 노동력 동원**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국산업’에 해당하는 업무라는 점이다. 「道알선」과 「총독부알선」은 그 대상이 토목건축업 이외에도 광업, 교통운송업 노동자로 확대하여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망**」으로, 또한 조선 외로 동원되는 노동자의 경우는 내무, 경무국장이 「**모집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주에 관한 건**」을 1940년 3월 12일에 각도지사 앞으로 통달하여 그것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였다.⁵⁾

■ 「모집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주에 관한 건」(1940년 3월 12일)

“이 건은 선내 노무조정 및 내지도향 단속에 관한 것 등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내지에 공출하기에 이르는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것의 실시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내지(内地) 이외의 鮮外에 대해 집단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공출할 때에 있어서도 본 건에 준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한 지역의 “모집 기간은 최대한 3개월로 할 것, 또 모집 완료에 이르기까지는 동일 읍면 내에 있어서 새로운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할 것, 특히 취업지를 조선 내에 있는 것과 조선 외에 있는 것과의 모집을 동시에 행하지 말 것, 모집은 부락을 단위로 해서 동일 부락민은 동일 고용주에 사역시킬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공장, 광산,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지금 취로 중인 노동자를 절대로 모집 또는 빼내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 노동자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집을 모집 신청자의 자유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官에 의해 그것을 협력하게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앞의 「노동자모집취체규칙」과 이 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공출 방법의 다른 점은 사업체의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동자모집취체규칙」에서는 없던 규정 즉, 모집 기간, 모집 지역, 관과의 협력체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조선 내에서의 노동력 유출을 줄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견 조선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으로의 노동자 동원이 시작되자 저임금과 강압적 노무관리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조선내 기업은 “반도 노무자 부족으로 생산 확충 속행 상에 지장이 있으니 이들 반도노무자의 내지 이주를 억제하고, 선내의 노동자로 적극 양성하여 적정하게 배

4) 「朝鮮職業紹介令ノ適用ニ關スル件」(昭和十五年三月二日各道知事宛内務、警務局長通牒)

5) 「募集ニ依ル朝鮮人労働者ノ内地移住ニ關スル件」(昭和十五年三月十二日各道知事宛内務、警務局長通牒) 내용 이하 주 없이 따옴표로 인용.

분해야한다”⁶⁾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내지로의 노동자 동원으로 인해 조선인 “노무자가 어디든 가도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내지의 고용조건이 비교적 좋은 것 등으로 인해 내지에 가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우 조건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지에 가버리지 라는 식의 일종의 시위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쓰기 어려워졌다.”⁷⁾는 이유에서다. 조선 내 기업가들은 일본행 조선인 노동자 집단이주의 결과로 조선 내의 노동 시장이 경색되어 전쟁수행을 위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국익의 이유를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즉 조선 내의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지키고 싶다는 이기심에 지나지 않았다.

■ 「조선인 공장노동자 내지이주 알선에 관한 협정의 건」(1940년 8월 29일)⁸⁾

소위‘내지 이주에 관한 건’의 경우는 석탄산, 금속산, 토목공사 등의 작업장에 동원될 경우를 포괄하는 규칙이다. 공장노동자의 경우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인 공장노동자 내지이주 알선에 관한 협정의 건]이다. (1)금속공장, (2)기계기구공장, (3)화학공장, (4)전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본 건에 의해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본 건의 특징으로는 해당 노동자가 14세에서 20세의 미성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피고기업 중의 하나인 신일철주금은 금속공장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미성년의 신분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것은 이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노무동원계획실시에 따른 소위 연고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이주 취급에 관한 건」(1941년 4월)⁹⁾

일본 본국정부가 정한 조선인 집단이주 정책에 따른 이주 방법으로 일본 기업측은 모집비용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통한 ‘연고도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일본 본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 내 기업들이 일본 본국으로의 ‘연고도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첩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연고도향’이었다.

‘연고도향’이라는 것은 이미 일본지역에 취업되어 있는 조선인 노동자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취직을 시키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최대한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 방법은 자발성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이점 뿐 만 아니라, 정착율도 높고 노동자의 감시와 통제도 용이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 측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조선 내 노동자들은 조선 내 총동원체제 속에서 자신들이 조선의 서북선 행이든 일본 내지

6) 『京城日報』1940년 11월 21일

7) 河村靜觀, 「半島勞務者の内地移動」 『社會事業』 (一九四一年一月), 59쪽

8) 陸軍次官官、企畫次官 「朝鮮人工場勞働者内地移住斡旋に關する協定の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1001832500、永存書類 甲輯 第4類 第1冊 昭和15年(防衛省防衛研究所)。

9) 北海道炭鋳株式會社、70年史, 홋카이도대학 도서관 소장

행이든지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탄광, 토목공사 장으로 官에 의해 강제 동원되는 상황 하에 처해 있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친지에 의해 노동 사정을 알고 갈 수 있는 ‘연고도향’에 응한다는 것은 총동원체제라는 국가적인 폭력 속에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자기표현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강제연행이 시작된 시기부터 연고 도향자 수가 급격히 늘었던 것¹⁰⁾도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41년 2월 내무성보안과장으로부터 경시청특고과장, 각부현 경찰부장 앞으로 보낸 「노무동원계획실시에 따른 소위 연고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이주 취급에 관한 건」도 노무동원 계획이외의 불급불요 산업 방면에 있어서는 일반연고도향은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¹¹⁾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적인 연고도향은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고도향, 연고모집에 대한 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당국에서는 「노무동원실시 계획에 의한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알선요강」에서 ‘조선총독부 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할 때는 도부현으로부터 조선인 노무자 이입고용승락통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요원충족을 **종래의 연고 및 지반** 혹은 선내노무조정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도별 알선인원 및 알선기간을 정¹²⁾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의 알선 희망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면 메이지광업 주식회사 히라야마 광업소는 1942년 알선신청서에 제1희망지역 전라북도, 제2희망지역 충청남도를 지정하고 그 이유로 전라북도는 노무자의 소질이 양호하고 응모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충청남도는 연고관계라고 하였다.¹³⁾

3) 동원되는 협력자

미쓰비시 다카지마(三菱高島)광업소의 노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도인 이입 관계에서 당국의 지시 명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시명령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운용이 잘될 것인가를 연구하면 길은 스스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업자 측의 연구가 긴요합니다.”¹⁴⁾ 이 발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 실태의 속성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조선인 노무동원에 있어서의 행정조치는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모든 수단을 용인해 주는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은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행정력의 강제가 일본으로의 모집으로는 실무자들의 편법으로 작용하였고 이 편법에 의해 조선인들은 불법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조선인에게 부당한 불법적인 요소인 편법들을 묵인하거나 혹은 행정조치로 제도화하여 그들 속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일련의 강제연행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모든 요소들이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이라는 목적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그 대상인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총체적인 강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제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일사분란한 단일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10)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98. 203-204쪽.

11) 『극비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제32권 한국출판문화원, 1990, 113-114쪽

12)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202, ぎょうせい

13) 田中直樹「戰時期における朝鮮人鋳夫の雇用狀態」、小澤有作編『近代民衆の記録10 在日朝鮮人』新人物往來社, 599.

14) 「第二回勞務担当者會議々事録(1940年7月9日・10日)」, 16쪽.

강제연행을 경험해야 했다.

■ 관의 협력과 공출 성과

일본 내지의 사업자가 이 시기의 모집이 자유모집 때와 가장 다르게 느꼈던 것은 ‘관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홋카이도탄광기선 주식회사가 1944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선인노무자공출표¹⁵⁾를 보면 노동자 공출에 있어서 관의 협력이 보다 절실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조선인노무자공출표’는 공출지역과 공출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다.

할당면, 수송일, 출발항, 소속탄광, 보도원, 연송인(인솔자), 할당인원, 할당면(갯수), 집합인원, 군에서 인수한 인원, 현지에서 항구까지 수송 중 도망자, 사증 및 부산주재원의 절충 불합격자, 공출지의 탄광에 관한 인식정도, 응모자의 탄광에 대한 인식태도, 군에 있어서의 공출여유의 유무, 면에 있어서의 공출여유의 유무, 참고 등의 난으로 나누어져 공출지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특별한 사고나 도망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말서」 형식으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되어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노동자 공출을 해 나갔다. 이 공출표에서 관의 협력관련은 공출지의 탄광에 대한 인식정도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난에 쓰여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관의 협력정도¹⁶⁾

협력상황	郡, 경찰: 협력적	郡, 경찰: 협력적	郡, 경찰: 비협력적	계
		면: 비협력적	면: 비협력적	
면 수	38	7	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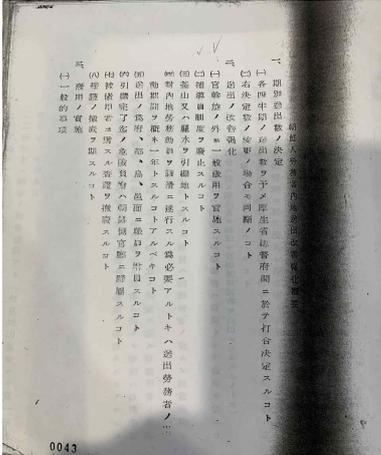
그림 3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공출통지표 예시

군과 경찰이 협력적이라고 했던 면이 38면, 군과 경찰은 협력적이었으나, 면이 비협력적이었다고 하는 면이 7개면, 그리고 군, 경찰, 면이 모두 비협력적이었다고 하는 면이 1곳이 있다. 항상 군과 경찰의 협력정도를 함께 묶어 이야기하고 면(혹은 하부기관)의 협력 정도를 떼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 군, 경찰과 면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군에서 인수한 인원이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15) 「供出通知表」, 北海道炭礦汽船株式會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學図書館所藏

16) 北海道炭礦汽船株式會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學図書館所藏

■ 송출개선평화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도망자의 속출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솔자, 연송인 등의 제도를 두기도 했다. 제도적으로 회사는 “(6) 인솔완료까지 위험부담은 조선측 관청에 귀속시킬 것”¹⁸⁾으로 정하여 일본정부 및 회사의 위험을 줄이고, 식민지 권력에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 ‘특수 노무자’로서의 노무관리

1) 조선인노동자를 멸시적 관점, 균질한 인간 상으로 규정하고 관리

1939년 9월 이후의 조선인 노동자 집단이입 정책은 탄광 건설업 사업주에게는 환영과 불만의 두 요인을 다 주는 정책이었다. 싼 비용으로 노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사업주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생기는 불안감이 그것이다. 조선인 노무자를 고용했던 경험이 있던 사업주들도 새로이 들어오는 집단조선인노무자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¹⁹⁾

“조선의 깊은 산속에서 모집에 응해 혹은 도보로 혹은 트럭으로 혹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차로, 기선으로 전후 10일을 보내 언어풍습이 전혀 다른 내지의 취업지에 도착한다. 피로도 풀 사이도 없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능률의 고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략) 훈련지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능률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도박근성으로는 조선인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삼가야 한다”²⁰⁾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탄광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산 속에서 살던” 미숙련 노동자가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들어온다는 것도 있지만, 선택권은 없지만 모집비용을 전부 사업주가 지불해야 했다. 조선인 노무자 모집비용(1인당 70엔~120엔)이 숙련 조선인 노동자 평균월급(30~40엔)의 2배 이상 들게 되기 때문에 획득한 노무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²¹⁾

각 사업장은 노무관리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의 특성을 균질화하여 취급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인은 (1)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완전한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는 민족이고, 사상 상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으로 사상 상 고착되어있고, 완고하다고 말하고 있다. 완전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민족이라서 항상

18) 朝鮮人勞務者內地送出改善強化概要,北海道炭鉄株式會社『産業報國會』北大図書館所藏資料 32.

19) 勞働科學研究所,「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昭和18年5月

20) 위의 자료

21) 위의 자료

피복종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음성적이며 태만하고 의뢰심이 많은 민족, 사상상 독자적이지 않다는 것은 항상 모방하고 독창적 사고나 기술적 사고가 불가능, 사상상 고착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매우 곤란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형식주의적 민족으로 형식적인 예의를 존중하고 대중 앞에서 질타할 경우, 극도로 반항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계급적 질서를 존중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3) 당파성이 강해 부화뇌동성이 강하고 자신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당파를 만들어 대중의 의견으로 하는 악풍이 있다고 파악했다. (4)성실하지 못하고, (5)은혜를 모르며 (6) 정착성이 결여되어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7)금전적으로 탐욕스럽지만, 태만하다고 분석하면서, 일은 태만하게 하고 급여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8)저축을 하지 않고, (9)위생관념이 결여되어 있다어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점은 단 3가지로 (1)관용적이라는 것을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게으르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2)온순하여 손위 사람의 말은 잘 듣지만, 환경이 바뀌면 불만을 토로, (3)낙천적인 것을 들면서 ‘비참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낙천적’으로 분석했다.²²⁾

이와 같은 분석은 단순히 스미토모 광산의 문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협화회 문건, 경찰, 석탄통제회 문건에서도 발견된다. 이 분석은 노무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작용하여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탄광회사는 조선인노동자를 ‘내지의 삶’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았다. 그 실천으로 일상의 “생활훈련”을 해야 한다고 정했다. 생활훈련이라는 것은 “언어풍습이 다르고 문화교육 정도가 낮은 조선인에게 내지의 생활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 황국 근로자로서의 공사(公私)생활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훈련 세목으로 “위생지도, 식사지도, 일상예의지도, 기상취침지도, 단체생활지도, 저축송금용돈지도, 방공방화재해방지 지도, 외출외박시행지도, 여가지도”²³⁾ 등이 있다.

생활훈련은 주로 기숙사에서 행하게 된다. 기숙사의 노무관리자가 맡아서 하게 된다. 이 담당 노무관리자는 주로 “상이군인”을 재취업시키는 방법으로 했다. 상이군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원호사업의 일환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선인 기숙사 생활 자체를 군대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선발 규정에는 “3개월간 반도어 강습을 받은 자”를 습득한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 C탄광은 “반도어관계 담당자는 반도어를 교습할 필요는 없다. 내지화 주지에 반도어를 모르는 편이 훨씬 좋다. 반도어를 알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²⁴⁾

생활훈련을 실시할 담당자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조선인과의 ‘소통’을 애초부터 거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선어를 알아 ‘소통’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조차 기피하려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일방 통행적 군대훈련을 통해 교정하려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관리자는 조선인을 다루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언해 준다. “조선

22) 『半島勞務員統理要綱』, 住友鴻之舞鋳業所(1941.1)

23)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

24) 위의 자료. 통역은 조선인 중 2명 정도를 고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통역은 반장과 더불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 학대를 받은 존재였다. 조사 결과에서도 반장과 통역이 조선인 노동자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고립해두면 신변에 위험이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며, 부화뇌동하는 결점”이 있지만, “순박하고, 온순하며, 어른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는 장점”도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인을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하면 된다고.²⁵⁾

조선인에 대하여 일반지도 외에 특별지도법도 구상하고 있었다. 특별지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숙사 주사가 행하는 것으로 했다. 1)정도가 미미한 정도의 노동자의 경우 (1)조선인의 생활습관과 다른 일본식 정좌를 시키는 것. 이것은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다는 점을 들었다. (2)결식. 한두끼 결식은 매우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식과 정좌를 같이 할 경우, 더욱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외출금지 (4)식염주사. 피병일 경우에 효과가 좋다고 적고 있다. 2)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1) 총검제재: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 원래 기숙사 주임은 총검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가능하게 했다. (2) 경찰서 유치: 파업의 주모자, 취사에 대한 불만, 선동자 등은 그 제재를 받도록 했다. (3) 타코베야 유치: 여러방법으로 교정을 하려고 해도 불평불만이 있거나, 광산의 규칙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 청부자인 타코베야(강제노동)에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타고베야 수용은 갱내 취로를 싫어하는 노동자에게는 현저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 기숙사의 주사는 “**평생 오점으로 남을 조선송환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어떻게해서든 교정해서 훌륭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눈물의 제재인 것이다. 불현 듯 깨달았을 때는 사랑을 품은 모친의 감정을**”잇으면 안된다고 각오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탄광 노동 이상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 노예상태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대식가 조선인’의 식사 통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일관적으로 ‘배고픔’이 고통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9년 11월 13일 홋카이도 유바리(北海道夕張) 탄광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에서 단체로 모집되어 온 조선인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관리실 앞으로 모여들었다. 노무관리원은 깜짝 놀라 그 원인을 물었다. 파업의 원인은 “밥을 더 달라”는 것이었다. 유바리 탄광은 이 파업에 “신속하고 철저한 태도로 임”해서 결국 하루 만에 해결했다.²⁶⁾

“신속하고 철저한 태도”는 조선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1943년 조사된 조선인 노동자 도망 이유 10가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배고픔’이었기 때문이다. 도망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에서 들었던 모집조건이 달라서이고, 두 번째가 임금에 관련된 불만, 세 번째가 갱내 작업에 대한 공포,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만족감이 없어서’였다.²⁷⁾

25)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

26)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北海道炭鉱汽船株式會社、『70年史』 1956年、1次原稿、北海道大學北方資料室所藏

27)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

그 원인으로 전시기 일본제국의 전반적인 ‘배고픔’의 배경이 되는, 1939년 4월부터 실시된 <미곡배급통제법> 등으로 시작된 식료품/물자/가격통제 문제에 관련한 분석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도망가야 할 정도의 이 ‘배고픔’은 조선인의 문제였던 것 같다. 이직율이 높은 석탄산 노동현장에서 적어도 일본 노동자는 ‘배고픔’이 원인이 되어 도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²⁸⁾

도망울에 부심하던 탄광의 노무관리자는 도망원인 중의 하나였던 조선인의 ‘배고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 회사는 생활훈련 중 주력했던 것은 위생지도와 식사지도였다. 노동자 건강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식사지도에 대해 살펴보자. 공통적으로 조선인은 ‘대식가’라고 인식했다. “일본에 막 도착한 조선인 중 하루에 한 되 2홉의 밥을 전부 먹어버리는 기록 보유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거기에 “조선인은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 거의 씹지 않고 넘겨버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한다고 분석했다. 부식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고추와 마늘을 즐겨먹고, 칙칙한 색깔의 장아찌를 주로 먹는다고 파악했다.

“착산 이후 조선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위장병에 걸려있다”고 하면서 이 위장병의 원인은 대식가인 조선인이 모두 걸려있는 병으로, “과식은 반드시 고쳐야 할 폐습”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질병조사를 해 보면, 반드시 위장병이 많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²⁹⁾

또한 탄광 당국은 조선인의 식습관 중 마늘과 고추를 많이 먹는 것도 폐습이라고 했다. 마늘과 고추는 과식을 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악취는 갱내 작업 시,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에는 마늘을 넣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³⁰⁾

탄광 당국은 이렇게 대식가 조선인의 식습관을 “전시식품절약 정책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장병까지 일으키는 것이므로” 고쳐야 하는 폐습으로 정했다. 분량을 줄이고, 조선음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마늘과 고추를 넣지 않아, 식사를 건강하게 내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선인의 식습관 그 자체를 바꾼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분량을 줄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해야 하지만, 조선인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지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선 정신적인 면의 지도로는 “식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철저히 하기 위해 식전과 식후에는 반드시 ‘이타다키마스(잘 먹겠습니다)’와 ‘고치소우사마(ご馳走様)’를 합창하게 하고, 눈을 감고 합창하게 하기”로 했다. “식당 출입구에는 神棚을 만들어 출입할 때 반드시 절을 하게 했다.” 그리고 “배급정량미 대용식 등에 관해서 충분 설명하게 이해시켜 국가 정책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탄광측에서 과식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밥에 국을 말아서 고추를 넣어서 씹지않고 마시는 습관을 금지”했다. 대신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최소 10 정도 씹는 습관을 들게 할 것”등을 정했다. 그리고 되도록 일정량의 식사를 급여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취사장에는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정했다. 식

28) 위의 자료.

29) 労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

30) 위의 자료

사에 대한 불평은 엄금하고, 과리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시키라는 것을 규정으로 했다.³¹⁾

이와 더불어 부식을 통한 방법도 고안했다. 탄광측은 우선, 조선인들이 즐겼던 소금과 간장을 넣고 짜게 만든 야채와 고추는 처음 반년 정도는 식단에서 빠지지 않게 하면서 다음의 식단을 10가지를 정하여 보여주고 돌려가면서 배식하도록 했다.

<식단>

(朝食) —	(晝食) 主として辨當の菜となるもの	(夕食) —
第1日 若芽の味噌汁漬物 汁に豆腐類を入れれば尚可	鹽鱈の煮付漬物	鱈の煮付 玉菜の漬物
第2日 芋殻の味噌汁漬物 汁に芋類を入れれば尚可	鹽鱈の焼もの漬物	鱈の煮付 五外芋の煮付漬物
第3日 葱の味噌汁漬物 豆腐又は蕪を入れれば尚可	天ぶらの煮付 コナゴの佃煮	鮪の煮付 大根切干の煮付漬物
第4日 鱈の味噌汁漬物	青南蠻に生味噌、角焼煮付漬物	豚肉、玉菜、大根、五外芋の煮付漬物
第5日 玉菜の味噌汁漬物	干しコマイの焼漬物	鳥賊の煮付 大根の煮付漬物
第6日 大根切干の味噌汁漬物	筋子漬物	鮪の焼 大根の漬物
第7日 目抜の荒汁漬物	豚肉の佃煮漬物	カマベシの煮付 茄子の煮付漬物

그러나 실제로는 위의 식단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료입수 등 도저히 식단 대로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선야채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다음날 식단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조선인은 가지 수보다는 분량이 많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찬의 가지 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양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결국 위의 식단보다 양과 수 모두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량은 생선류는 뼈있는 생선의 경우는 30~40匁(112.5~150g), 뼈 없는 자른 생은 20匁(75g) 정도로 제한했다. 육류는 돈까스의 경우 10~20匁(37.5~75g), 야채와 같이 조리한 것은 10~15匁(37.5~56.25g), 야채류는 생선과 함께라면 30~40匁(112.5~150g)로 정했다.³²⁾

실제로 조선인 노동자가 먹은 식단의 예를 보면, 위의 규정보다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일은 양파된장국 장아찌, 점심은 멸치조림·장아찌 도시락, 저녁은 무, 파 된장국, 장아찌였다. 공휴일은 아침 감자된장국 장아찌, 점심은 파된장국 장아찌, 저녁은 두부간장절임, 장아찌, 팔밥을 먹었다.³³⁾ 밥의 양은 당시 조선인 가족에게 배급하던 쌀의 양이 초기에는 1인당 하루 5합 정도였다가, 1941년경부터는 3합 정도가 됐다. ³⁴⁾

노무관리자는 조선인이 이렇게 양을 줄이고 잘 씹어서 먹기 때문에 점점 위장병이 줄어들어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식사훈련을 통해 생활양식이 변하여 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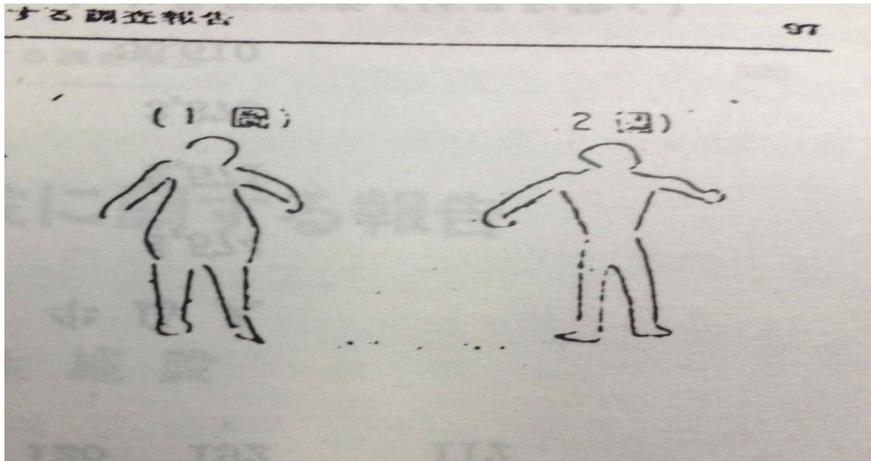
31) 前田一、『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山海堂、1944年(再刊)、96

32) 앞의 자료 97.

33) 松本正徳、『日本勞務管理史』、中央大學出版部、1999年、135

34) 勞働科學研究所、「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昭和18年5月

는 圖 1과 같은 몸이 圖 2와 같은 건강한 체격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⁵⁾



당시 노동과학연구소에서는 탄광산노무자의 영양식단라는 글에서는 탄광노무자의 하루 적당 섭취량이 주식으로 3,000칼로리, 부식물로 10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하고, 식사회수는 8시간 3교대제에서는 갱내식 3회 갱외식 1회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적고 있다. 갱내 도시락의 대부분이 부식으로 우메보시 또는 장아찌 밖에 먹지 않는데, 그것은 영양실조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³⁶⁾

다시 앞에 소개한 조선인의 실제 식사를 보면 부식으로는 3끼 모두 장아찌 밖에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학연구소에서 경계한 영양실조 상태를 걱정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사문제로 파업이 일어난 것은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예로만 들면 1941년 8월, 1942년 6월30일 등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두 사건에서는 폭행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났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⁷⁾ 이렇게 조선인 노동자는 단체행동을 통해 식사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또한 남의 도시락을 훔쳐먹고 벌을 받거나 하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³⁸⁾

4. 맺음말

전시기 조선인에 대한 노무동원은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내의 노무자원을 조사하고(1938년), 북한으로의 노무동원, 만주개발을 위한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정부는 1939년부터 연도별 노무계획을 총체적 일본제국의 영역에서 계획했다. 조선총독부는 그 범주 내에서 조선내의 동원체제를 구축

35) 위의 자료.

36) 労働科學研究所, 「炭鉱山勞務者の榮養獻立」, 『朝鮮勞務』, 第2卷 第6号, 1941

37) 北海道炭鉱汽船株式會社, 『70年史』 1956年, 1次原稿, 北海道大學北方資料室所藏

38) 前田一,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1944年(再刊), 161

해 가면서 실시했다. 그중 소위 강제연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에서 일본내지로의 동원은 조선총독부의 계획과는 달리, 일본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동원은 점령지인 중국과는 달리, 식민지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동원하여, 징용과 같이 국가적 책임을 져야하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국가직업소개령 등을 확대 적용하면서 되도록 '자발성'을 유도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 소위 관의 알선에 의한 '모집'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점, 즉 1939년 당시 일반 일본도항을 금지하면서 탄광, 광산, 토목 노동 등 시국산업에만 취업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 그와 같이 집단적 노동자의 경우, 1)경찰에 의한 관리 2)이동방지 3)기숙사 생활 강요/생활 교육 필수 4)2년 계약 재계약 불능(하지만, 1941년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 연장정책을 펼치기도 했다)등, 동원지역의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협화회에서 관리하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 도항노동자인 재일조선인과도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예외적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탈식민’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염운옥(경희대)

1. 2001년 더반회의와 탈식민의 흐름
2. 식민지 폭력 피해와 배상: 케냐 마우마우의 사례
3.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1. 2001년 더반회의와 탈식민의 흐름

1) 탈식민의 이정표, 더반회의

2001년 더반회의는 세계적인 규모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탈식민의 세계사적 흐름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다. 2001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유엔이 개최한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인종주의 반대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다. 더반회의는 식민주의가 초래한 장기적 악영향이 역사적 부정의(不正義)의 원인이며, 과거 식민지배와 노예제가 오늘날 인종차별의 원천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부정은 뚜렷한 흐름을 이루었고, 유엔 선언으로 표출되었다. 1960년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식민지 독립부여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은 식민주의의 조속하고 무조건적인 종결을 내세웠고, 1965년에 채택한 ‘인종차별 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반회의는 1965년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이 개최한 국제회의로 전 세계 인종차별의 원인, 형태, 예방, 구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더반회의 준비단계에서 아프리카 각국을 중심으로 과거 식민지배와 노예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자체가 인종차별행위이며 동시에 오늘날 인종차별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빈곤과 경제적 격차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책임있는 국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를 행했던 국가는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선언도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구 제국은 배상과 사죄에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채택된 선언문은 첫째 노예제와 식민지배가 인종차별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둘째 노예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으나, 이에 대한 배상도 명확한 사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셋째 식민지배에 관해서는 식민지배를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문장도 없고, ‘유감’ 이상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것이 되었다. 더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과 인정과 이스라엘 비난에 반발해 9월 3일 회의장에서 철수했던 일은 더 반선언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곧 이어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의 세계화와 안보정치의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국제정치에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아젠다는 퇴조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더반회의는 국제연합 주최의 세계회의로 식민지배와 노예제 책임이 국가의 틀을 넘어 국제적으로 추궁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제사회가 각국에 대해 각자의 사법체계 안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없더라도 이행 여부를 국제 사회로부터 감시받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반회의에 이르는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냉전 구조가 붕괴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뚜렷하게 부상했다. 1993년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서 배상에 관한 범아프리카회의가 개최되어, 노예제, 식민지배 등에 의한 아프리카계 주민의 피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제와 식민주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도 1994년 노동당 의원 버나드 그랜트(Bernard Grant)에 의해 아프리카배상운동(The Africa Reparations Movement)이 전개되었다. 그랜트는 가이아나 출신의 흑인 정치인으로 첫째, 영국 여왕의 공식사죄, 둘째,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불법 취득한 킬리넨 다이아몬드 반환과 1897년 베냉에서 불법 취득한 베닌 브론즈 유물 반환, 셋째, 제3세계 부채의 상환 취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은 구 식민지배국에 널리 퍼져있던 식민지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 식민주의와 노예제와의 연루에 대해 감각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영국의 페미니스트 역사가 캐서린 홀(Catherine Hall)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 유럽인’의 집단적 책임의식을 일깨웠다. “우리 유럽인은 선주민이든, 정착민이든 디아스포라이든, 또한 식민주의의 직접적 후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식민주의와 노예제의) 역사에 연루되어 있다. 우리의 근대 사회는 노예제가 만들어낸 부의 혜택을 누렸고, 우리는 노예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심각한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¹⁾

2) 탈식민의 실천들

더반회의 전후 식민지배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 의미있는 사례들이 여럿 축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탈식민의 정당성과 필연성이 선언되었다 해도 실질적 변화는 개별 국가에서의 사법적 해결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식민 실천의 사례들은 법적 조건이 갖춰진 경우와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법적 조건이 갖춰져 배상을 받은 경우는 영국-케냐 마우마우(Mau Mau) 재판과 네덜란드-인도네시아 라와게데(Rawagede) 재판이 있다. 마우마우 재판의 경우는 생존하는 직접 피해 당사자가 구 식민 종주국에 개인 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2장에서 상세히 소개).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재판은 학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인도네시아는

1) Catherine Hall, “Exploring European Slave-Ownership,”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1.1(2014), p. 119.

2차 대전 중 일본에 점령됐는데 일본 패전 후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구 종주국 네덜란드가 무력에 의해 재식민화를 시도했고, 격렬한 독립전쟁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947년 서 자바 라와게데 마을에서 네덜란드 군대가 남성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 발생했다. 2005년 인도네시아 독립 50주년 기념에서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독립전쟁 희생자에 대해 ‘도의적’인 사죄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유일한 생존자 남성과 희생자 유가족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2011년 헤이그지방재판소는 공식 사죄와 생존자 1명과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마우마우와 라와게데의 경우처럼, 피해의 당사자가 생존하고, 비인도적 행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정치가, NGO, 법률가, 역사연구자 등과 조력해 여론을 일으키고 소송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한 경우가 축적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초 독일이 식민지 서남아프리카(현 나미비아)에서 헤레로족과 나마족에 대해 자행한 집단학살과 강제수용 등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사죄와 배상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로는 아이티와 대서양 노예제 배상이 있다. 역사상 최초의 흑인공화국으로 1804년 독립한 아이티에서는 구 종주국 프랑스에 대해 60년 이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2002~2004년 아이티의 대통령은 배상금의 ‘반환’과 ‘보상’을 프랑스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3년 7월 초 자메이카, 안티가바부다, 아이티, 수리남 등 카리브해 연안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인 카리콤(CARICOM) 14개국이 300여 년 만에 노예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노예무역과 원주민 대량학살의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영국·프랑스·네덜란드 3개국 정부를 상대로 공동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재판은 열리지 못했지만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미는 크다. 영국에서는 1833년 노예제폐지법(the Slavery Abolition Act)이 통과되고 보상받은 건 노예가 아니라 노예소유주였다. 노예소유주들이 청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은 46,000건에 이르렀다. 영국 정부는 약 3,000여 노예소유주 가문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2,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재무부 1년 지출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일례로 19세기 영국 자유당 정치가로 수상을 네 차례나 역임한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의 아버지 존 글래드스톤(John Gladstone)은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노예소유주였다. 존 글래드스톤은 영국령 기아나의 아홉 개 플랜테이션과 2,508명의 노예를 상실한 대가로 106,769파운드(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8,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240억 원)를 보상받았다. 미국에서도 1863년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이 있었지만, 해방노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회복이나 물질적 배상은 없었다. 대서양 노예제 피해자의 배상·보상은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 식민지 폭력 피해와 배상: 케냐 마우마우의 사례

1) 마우마우와 영제국주의에 대한 도전

마우마우란 1950년대에 일어난 케냐의 무장독립운동을 말한다. 케냐가 1895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자 많은 백인 이민자들이 케냐 중앙의 고원지대에 정착했다. 식민정부의 백인 정착민 우대 정책과 인종차별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을 낳았고, 1920년대부터 케냐의 독

립을 추구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 백인 우선 정책이 한층 심화되고 아프리카인의 토지몰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최대다수 부족이자 최대 피해자인 키쿠유(Kikuyu)족을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 단체 마우마우가 결성되었다. 마우마우들은 영국인과 영국에 협력하는 케냐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마우마우 운동은 195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장 격렬했던 시기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였다. 1952년 10월 케냐 총독 이블린 베링(Evelyn Baring)은 비상사태(emergency)를 선포하고 마우마우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1956년에는 마우마우 지도자 디단 키마시(Dedan Kimathi) 장군이 체포·처형되었다.

식민지 케냐의 비상사태는 8년간 지속됐다. 비상사태가 종식되고 수용소가 철거된 것은 1960년이었고, 케냐는 1963년 12월 12일 독립했다. 비상사태 동안 사상자 숫자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영국 측 공식기록은 사상자가 11,000명이라고 하지만, 케냐 정부는 90,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제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마우마우 진압 과정에서 식민정부는 가담자와 혐의자를 분류해 1952년부터 수용소로 보냈다. 이런 수용소는 케냐 전역에 건설되었고, 150여 곳에 달했다. 최소한 100,000~150,000명의 키쿠유 민간인들이 재판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수용소 운영은 ‘재활’과 ‘문명화’로 포장되었으나, 수감자는 육체노동을 강요당했고, 극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학살당했다.

나치의 강제수용소와 홀로코스트를 맹렬히 비난하며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영국이 식민지 케냐에서 강제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952년이라는 시점은 이미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반(反)인도 범죄’로 단죄된 이후이다. 마우마우 재판은 법과 민주주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레토릭 위에 구축된 영제국주의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2) 마우마우 재판의 경과와 합의

1963년 케냐가 독립하고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는 마우마우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마우마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부분의 케냐인들은 마우마우 운동이 독립 성취에 공헌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냐타가 제시한 마우마우 전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피해 조사 작업도 신생국의 혼란 속에 시작되지 못했다. 1978년부터 집권한 대니얼 아랍 모이(Daniel Arab Moi)의 독재정권 치하에서 식민지 과거사 배상문제는 망각됐다. 향토방위대와 경찰관 출신 친영파들은 1970, 80년대까지 여전히 건재했다. 일례를 들면 비상사태 시기 악명 높은 경찰관이었던 한 키쿠유 남성은 유럽식 저택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모두 비싼 기숙학교에 다니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주택과 가게를 몇 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식민지 피해 배상을 받아낸 출발은 케냐의 민주화에 있었다. 변화는 2002년 야당연합이 집권하면서 시작했다. 이때부터 케냐 정부가 마우마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5만여 명이 마우마우 관련 피해를 겪었다고 케냐 인권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결과를 두고 독재정권 종식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면서 부족 간 분쟁이 극심해졌고 마우마우 문제 제기는 다

시 연기되었다.

케냐 정부가 선뜻 나서지 않는 사이에 2009년 마우마우 피해자 5명이 개인 자격으로 영국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므디쿠 무투와 무투아(Mdiku Mutwiwa Mutua), 파울로 느질리(Paulo Nzili), 왓부구 와 닝기(Wambugu wa Nyingi), 제인 무쏘니 마라, 수전 은곤디(Susan Ngondi), 다섯 사람 모두 70세가 넘는 노인들이었다(수전 은곤디는 몇 년 동안 계속된 소송 도중에 노령으로 사망). 소송 제기가 가능하려면 우선 마우마우를 비범죄화해야 했다. 마우마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영국 식민주의의 유산이었는데, 2002년 불법단체에서 독립운동 단체로 재규정하면서 공개 증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케냐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증언 수집에 착수했고, 2005년 영국 로펌 리데이(Leigh Day)와 접촉했다. 리데이는 1,500명을 인터뷰했고, 5,228명이 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인들이 영국 외무·영연방부(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심리(審理, hearing)가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열렸다. 1차 심리는 2011년 4월 7일~4월 14일에 열렸고, 1차 심리 판결문은 2011년 7월 21일에 나왔다. 2차 심리는 2011년 7월 16일, 7월 23일, 7월 25일에 열렸고, 2차 판결문은 2012년 10월 5일 나왔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은 영국 국립공문서관과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문서관 자료 이외에 제3의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300상자 분량의 민감한 자료로 케냐에서 영국으로 밀반출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이 자료는 헨슬롭파크(Hanslope Park) 소재 외무성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 맥콤(McCome) 판사는 “이 새로운 자료들은 영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 때문에 케냐 독립 당시 (케냐로부터 영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었다”²⁾고 판단했다. 사실 심리 판결문은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결정이) 비상사태 시기 수감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문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 있는지를 재판에서 따질 만하며, 그럴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³⁾고 결론 내렸을 뿐이다.

맥콤 판사의 심리 판결문이 나왔을 때 영국 외무부·영연방부의 반응은 처음에는 침묵이었다.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했고 전격적으로 합의(settlement)에 이르렀다. 2013년 6월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 당시 영국 외무장관은 케냐 식민통치 시기 영국 식민정부가 케냐인을 상대로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금 배상(monetary reparation), 청구인과 5,228명에게 각 2,600파운드 지급
- ② 마우마우 기념비 건립. 나이로비 우후루(Uhuru, 자유) 공원에 2015년 9월 12일, 마우마우 기념동상 제막
- ③ 하원에서 외무장관의 공식 사죄
- ④ 나이로비에서 전 마우마우 앞에서 영국 고등판무관이 사과문 요약문 낭독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있었다. 영국의 사죄와 배상 합의를 끌어낸 배경에는 4명의 케냐인이 청구한

2) Mutua v.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1] EWHC 1913 (QB), at para. 130.

3) Mutua v.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1] EWHC 1913 (QB), at para. 134.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공이 컸다. 심리의 쟁점은 1952~1960년 케냐에서 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벌인 폭동 진압이 국가폭력인가 아닌가, 국가폭력이라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다. 청구인과 법률 대리인 리데이 로펌은 고문과 폭행을 포함한 잔인한 학대와 고문이 보안부대와 향토방위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산된 식민 국가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국가폭력 문제로 제기하고자 했다. 1952년 부임해 비상사태 시기 마우마우 진압을 지휘했던 조지 얼스킨(Geroge Erskin) 장군은 영국군과 보안부대뿐만 아니라 케냐인 향토방위대를 지휘체계 휘하에 포함시켰고, 이는 식민당국이 폭력을 지시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피고 영국 정부는 상호 협의 하에 임시정부를 거쳐 식민통치권을 이양한 만큼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케냐 정부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문서에 대해서도 마우마우 관련 문서는 모두 케냐 임시정부에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탈식민화 과정에서 영국은 조직적으로 영국에 불리한 증거가 될 ‘민감한’ 관련 문서를 빼돌려 런던으로 옮겼던 것이다. 처음에는 폐기되었다고 했으나 2011년 재조사 결과 헨슬롭파크 외무성 문서보관소에서 분실됐던 문서상자 더미가 발견됨으로써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헨슬롭파크에서 발견된 문서는 케냐 관련 문서만 약 300상자, 1,500개 문건에 달했다. 헨슬롭파크 문서는 케냐뿐만 아니라 말라야, 사이프러스 등 37개 피식민 국가와 관련된 8,000여 건의 문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영국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계속 직면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전문가의 조력이다. 심리에서 주목할 사실은 전문 역사가의 활약이었다. 마우마우 운동에 관한 역사연구의 성과가 케냐인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영국 역사가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의 『사형수의 역사』⁴⁾, 다니엘 브랜치(Daniel Branch)의 『마우마우의 패퇴, 케냐의 창조』⁵⁾, 미국 역사가 캐롤라인 엘킨스(Caroline Elkins)의 『영국의 강제수용소』⁶⁾가 마우마우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BBC가 2002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케냐: 백색테러(Kenya: White Terror)》는 엘킨스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엘킨스가 직접 출연했다.

셋째, 여론의 압박이 작용했다. 심리 판결문이 나오자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 등을 비롯한 원로들이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 고문, 구타, 거세, 성폭행 등 직접적 피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매우 위선적으로 보일 것이며 현재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정부와 지도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버티 UK(Liberty UK) 등 NGO 단체의 연합 항의 서한도 이 사건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정신에 위배되며 영국의 도덕적 위신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3) 마우마우 심리 판결문의 의의와 한계

4) David M. Anderson, *Histories of the Hanged: the Dirty War in Kenya and the End of Empire*,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5.

5) Branch, Daniel. *Defeating Mau Mau, Creating Kenya: Counterinsurgency, Civil War, and Decolon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6) Elkins, Caroline. *Britain's Gulag: The Brutal End of Empire in Kenya*. London: Random House, 2005.

마우마우 심리 판결문이 식민지 피해의 책임 소재에 관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 내적 영역과 법 외적 영역으로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 내적 영역,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심리 판결문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영국 본국 정부와 식민정부 사이의 관계에 적용했다. 대리책임이라는 법리를 식민주의에 적용한 것이다. 대리책임은 사용자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고용인이 직무상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책임을 영국 정부와 식민정부 사이에서 인정한 것이다. 맥콤 판사는 “반란의 진압과 통제라는 영국 정부와 식민지 행정부의 공동 실행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구금이 실행되었음을 재판에서 밝힐 수 있다”⁷⁾고 판단했고, 이에 맞선 영국 정부의 주장, “케냐 사태에 대한 책임은 총독 관할의 식민지 행정부에 있다”에 대해 기각했다. “현재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식민지 행정부는 런던 영국 정부의 명령에 따랐고, 보안대는 얼스킨 장군의 명령에 따랐다”⁸⁾는 것이다. 식민지와 제국의 피해에 일반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책임을 확대 적용해, 식민지 피해를 일반법 체계 안으로 포함시킨 판결은 식민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식민지 범죄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전환을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⁹⁾

다음으로, 법 외부의 규범적 환경의 변화가 마우마우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제노사이드와 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실현, 구 유고 강간 캠프에 대한 국제사법법정의 판결 등에 힘입어 식민지 범죄도 사법적 정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예제나 식민주의를 과거에 합법이었다는 이유로 변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우마우 판결은 이러한 법 외적인 사회적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세실 로즈 동산 철거 운동(Rodes Must Fall)’에서 최근 ‘흑인은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에서 브리스틀의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톤 동상 철거에 이르기까지 영제국 식민주의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우마우 심리의 판결문이 식민지 시기 고문 피해를 영제국을 구성하는 구조적 악으로 규정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영국 정부와 식민정부 사이에 대리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일탈과 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식민지배 본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합의에 나섬으로써 식민통치 시기에 고문 피해에 대한 개인배상에 합의한 첫 사례가 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마우마우 재판에서 영국 정부가 마우마우 전사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해 갖은 고문과 폭력, 강간,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일본 식민지 시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우마우 심리 판결과 합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고문 생존자와 직간접적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41,005명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외무장관의 성명이 나온 후 케냐변호사협회 아폴로 음보야(Appollo Mumboya) 회장은

7) *Mutua v.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2] EWHC 2678 (QB), at para. 84.

8) *Mutua v.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1] EWHC 1913 (QB), at para. 143.

9) Jennifer Balint, “The ‘Mau Mau’ Legal Hearings and Recognizing the Crimes of the British Colonial State: A Limited Constitutive Moment,” *Critical Analysis of Law* 3.2 (2016), p. 277.

마우마우 식민피해 케냐인 8,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신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로 접수된 피해자 명단까지 확보하면 청구인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마우마우 재판은 정의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제국사를 다시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었다. 마우마우에게 자행한 잔혹한 폭력이 드러남으로써 영제국의 통치와 탈식민화에 관한 통념과 역사서술은 도전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우마우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은 프랑스제국의 탈식민화가 알제리 전쟁에서 보듯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반면, 영제국의 탈식민화는 ‘영연방(Commonwealth)’의 형성을 향해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수행되었다는 ‘신화’를 뒤집는 증거다. 영제국은 다른 제국들 ‘못지않게’ 잔인했기 때문이다.

3.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마우마우 판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식민주의를 단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탈식민의 도도한 물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어느 식민지배국가도 식민주의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사죄와 배상의 개별적 사례가 하나씩 축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천명하고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치하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¹⁰⁾

대법원 판결은 또한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것은 근대 법의 기본 원칙임을 지적하고, 식민지배 같은 불법적 지배하에 이뤄진 강제노동에 관해서, 피해자 개인이 적극적으로 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조약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약의 문언에 포함시킴으로써 개개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¹¹⁾

10)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다61381 (2018), 15~16쪽.

11)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다61381 (2018), 42쪽.

국가청구권과 개인청구권은 다른 것이며 개인 청구권은 당사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며, 개인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에서의 두 사례로도 입증된다.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 외무성 심의관은 패전 후 일본군의 시베리아 억류에 관해 ‘일소 공동선언’으로 배상은 포기했으나 억류당한 일본인 개인 청구권은 살아남아 있다고 답변했다.¹²⁾ 또한 2007년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쓰 건설 판결에서도 한국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¹³⁾

마우마우의 사례의 경우, 법적 해석은 대리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제한적이며 보수적인 해석이었으며 식민지배 하에서 발생한 피해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피해라는 법리적 해석까지 이르지 못했다. 개인 당사자에게 입힌 피해가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배상 소송이 성립한다는 심리 결과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였다. 식민주의 극복과 탈식민주의 정의 회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모범 국가나 모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개인 청구권을 확인한 2018년 대법원판결은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외교적 실패나 국익의 포기 같은 차원을 넘어 더반선언 이후 탈식민주의 법적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과오에 다름 아니다.

12) 우치다 마사토시 저, 한승동 역, 『강제징용자의 질문』 (한겨레 출판, 2021), 37쪽.

13) 우치다 마사토시, 『강제징용자의 질문』, 39쪽.

<요약문>

‘탈식민’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의의

염운옥 (경희대)

마우마우 재판은 영국 정부와 식민정부 사이에 대리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케냐 독립운동 시기 수용소 고문 피해 당사자에 대해 영국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개인 배상에 합의한 사례였다. 합의 내용은 청구인과 5,228명에게 각 2,600파운드의 현금 배상, 마우마우 기념비 건립, 하원에서 외무장관의 공식 사죄, 나이로비에서 영국 고등판무관이 사과문 요약문 낭독 등이다. 마우마우 사례는 식민지배 하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피해라는 법리적 해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 해도 영국 정부가 마우마우 전사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해 고문과 폭력, 강간,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일본 식민지 시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우마우 심리 판결과 합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식민주의 극복과 탈식민주의 정의 회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모범 국가나 모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개인 청구권을 확인한 2018년 대법원판결은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더반선언 이후 탈식민의 법적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과오에 다름 아니다.

강제노동자에 대한 독일의 배상과 보상 정책: 정치·외교적 ‘타협’ 을 넘어선 ‘역사적 청산’ 으로1)

송충기(공주대)

1. 들어가는 말
2. 나치 치하의 강제노동자란?
3. 전후 ‘잊힌’ 피해자 : 배상과 보상에서 제외
4. 전환: 희생당한 고통을 위한 ‘인정투쟁’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오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낳았다. 물론 독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범죄 사실 때문에, 이들 피해자의 배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유독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만큼은, 그것이 나치의 전형적인 피해가 아니라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거부했다. 구(舊)서독 정부, 법원, 기업은 한결같이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노동자의 피해배상을 일축했다. 그러다가 통일 후 독일은 태도를 바꾸어 이것의 해결에 노력했고, 드디어 2000년 외국인 강제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수용했다. 이 보상은 뒤늦고 상당히 미흡한 조치였으며, 게다가 겉으로 보면 법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청산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물론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그렇지만 강제노동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더 더딜지라도 역사적 청산의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가이다. 다시 말해 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당대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졌는지 혹은 역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전자라면 직면한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후

1) 이 발표문은 다음의 내용을 축약하고 조금 수정한 것이다. 송충기, 「독일의 뒤늦은 과거청산 - 나치하 외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73(2005), 271~293쪽.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출간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했던 다음 두 책을 더 참조했다. Constantin Goschler, *Schuld und Schulden. Die Politik der Wiedergutmachung für NS-Verfolgte seit 1945* (Göttingen, 2005). Henning Borggräfe, *Zwangsarbeiter-Entschädigung. Vom Streit um 《vergessene》 Opfer zur Selbstaussöhnung der Deutschen* (Göttingen, 2014).

자라면 당연히 역사적 인식을 해결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잣대를 과거의 ‘부득이한’ 상황이나 그 시대의 관점에 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의 가치 기준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강제노동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곧 그것이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그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강제노동 자체의 폐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가이다.

2. 나치 치하의 강제노동자란?

우선, 나치시기에 강제노동자가 누구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화하면서 젊은 남성이 대거 전쟁터에 동원되자 독일에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에 나치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인력자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점령지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동원하여 방법을 찾았다. 전쟁 기간에 모두 약 2천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강제노동자(Zwangsarbeiter)’로 통칭하기란 어려운데, 그것은 이 용어 자체가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도 아주 다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치 치하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직(轉職)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동을 근거로 하여 강제노역을 정의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강제노동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수용소에 갇히어 노역에 시달린 사람들은 노예노동자(slave laborer)에 가깝다. 예컨대 강제수용소나 포로수용소에 감금된 채 강제노역에 종사한 유대인과 전쟁포로의 경우가 바로 그들이다.

물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류는 소위 ‘외국인노동자’ (Fremdarbeiter)이다. 이들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동원된 외국인 민간노동자로서, 나치 정권은 이들을 한편으로는 모집의 형식을 빌려서, 또 다른 한편으로 강제수단을 써 동원했다. 주로 서유럽 노동자, 곧 프랑스나 벨기에에서 온 사람들은 ‘자원하는 형태’였지만, 동유럽 출신 노동자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끌려온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후자의 경우에 독일 점령 당국은 일부러 그곳 지역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거나 혹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을 빌미로 노동자를 위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수용소 등에 갇히지 않았지만 여러 방식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출신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 서유럽 출신인가 동유럽 출신인가에 따라 대우도 아주 달랐다. 우선, 노동조건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서유럽 민간노동자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독일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유럽 노동자들은 별도로 규정된 임금을 받았는데, 그 명목임금의 수준은 독일 노동자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40% 정도가 낮았으며, 실질임금은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크룹(Krupp)사의 경우 독일 노동자는 평균 월 180RM, 서유럽 민간노동자는 165.25RM(독일 노동자 대비, 91%), 동유럽 남성노동자 73.25RM(41%), 여성노동자 66.75RM(37%), 그리고 포로 121.5RM(67.5%)였던 것으

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상의 일이고, 실제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예도 있었고, 사실상 ‘민간인 포로’처럼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인종주의적인 차별정책도 한몫했다. 곧 ‘동유럽 노동자’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P(폴란드 노동자)’나 ‘Ost(동부: 소련 지역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찰을 붙이고 다녀야 했고, 거의 다 수용소에 거주하면서 특히 엄한 감독과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부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그 평균 연령은 20살도 채 못 되었다. 그 배후에는 동유럽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게 함으로써 동유럽 남성 노동자들이 독일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독일인의 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종주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었다.

이 강제노동에 종사한 외국인의 수는 1944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8백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민간 강제노역자는 570만 명, 전쟁포로는 190만 명, 강제수용소 수감자는 50만 명 정도였다. 이 당시 외국인 강제노역자의 수는 전체 독일 경제 종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육체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군수산업에서는 이 외국인 강제노역자의 비중이 더욱 컸다. 혹사, 영양부족, 열악한 시설 및 위생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망에 이른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후 고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회, 농업, 숙박업, 일반 공공관청에까지 투입되었으며, 심지어 가정에서 보모로 일한 예도 있었다.

3. 전후 ‘잊힌’ 피해자 : 배상과 보상에서 제외

전쟁 직후 독일 사회에서 강제노동자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전후 나치 주요범죄자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강제노역이 기소 사유 가운데 하나이긴 했고 또 그 책임을 추궁하긴 했지만, 처벌은 광범위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문제가 이후 독일 정치계나 여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당시에는 강제노동이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고, 인권탄압이나 강제성에 대한 보상의 관념도 극히 희박했다. 게다가 서독 정부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은 전쟁배상으로 종결되었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동독 정부는 자국은 나치정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나치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쟁배상을 통해 보상받은 것도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전쟁배상 문제는 예전에 비하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물론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연합국은 1953년 ‘런던채무협약(Londoner Schuldenabkommen)’을 체결하여, 서독과 전후 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했다. 여기에서 서독 정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피해국의 배상요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73억 마르크를 12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유리한 결정을 얻어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었다.

게다가 동유럽에서도 전쟁배상 문제가 매듭지어짐으로써, 강제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더 제기될 수 없었다. 사실 동독 정부는 소련에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서독보다 훨씬 더 많은 현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상당한 영토를 할양했다. 그래서 1953년 소련 당국은 폴란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동독에 대한 더 이상의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동유럽 국가의 법적 보상청구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서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국가들, 곧 주로 런던채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공산권 국민의 보상 문제도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논거 이외에도 동유럽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냉전 시기에 더 제기되지 못했던 정치적 이유도 존재한다. 곧 미국 정부는 철의 장막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동구 쪽에 단 한 푼의 돈을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만약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전쟁배상을 통해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나치 피해자로서 보상받는 길이 있을 수 있었다. 1953년 서독의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독일연방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BEG)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이었던 강제노동자는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 법이 규정하는 나치의 불법행위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이유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박해’로서, 강제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강제노동자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일로 여겨졌다. 노동자를 데려올 때, 자유를 침해한 것은 적 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배상법에 따르면, 배상은 박해받은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들의 체포, 구금, 건강 악화에 따른 배상이었다.

전쟁배상 및 국내법에 따른 배상에서뿐만 아니라 외교협약을 통한 배상에서도 강제노동자는 여전히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되었다. 예컨대, 서독 정부는 1952년 이스라엘 및 세계유대인배상협회에 나치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지급했지만, 강제노동자는 여기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어 이러한 배상을 받지 못한 주변국, 특히 서부 유럽 국가가 항의를 제기했고, 이에 서독 정부는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서둘러 이들 11개 국가와 포괄협정을 맺고 나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보상도 민간인 강제노동자가 아니라 전쟁포로의 강제노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 게다가 동유럽 민간인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냉전의 상황 때문에 여전히 제기되지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독은 동유럽 국가 가운데 폴란드와 협력관계가 중요해지자, 결국 1975년 폴란드에 경제차관이란 명목으로 10억 마르크를, 그리고 폴란드 출신 강제노동자의 연금 청구를 상쇄하는 대가로 13억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렇지만 이 기금이 실제로 강제노동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 경제차관이었으며, 또 그 액수도 여러 면에서—서독 노동자들의 연금 수준과 비교하거나 서독 연방보상법에 따라 나치 희생자들이 보상받는 것에 비하면—약소했다.

게다가 이들 협정을 맺으면서 서독 정부는 강제노동을 나치의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서독 정부 당국자나 법원은 독일 통일 이전까지 강제노동은 전쟁배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것은 외국인 민간 강제노역자나 강제수용소에 있었던

독일인 수감자(유대인 포함)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강제노동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나치의 대기업(AEG, 크롭Krupp, 폴크스바겐Volkswagen, 바이엘Bayer, 지멘스Siemens)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이들은 런던채무협약으로 배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라는 현실적인 요소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 곧 강제노동자 개개인이 엄청난 소송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승산이 보장되지 않은 법정투쟁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마디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싸움이었다. 이런 골리앗을 그나마 약간 움직이게 한 것은 유대인 조직들이었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었던 많은 유대인이 강제노동에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보상 문제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의 법정투쟁도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판결에서 중요한 요소는 나치 때 민간기업이 소위 ‘독일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강제노동자의 보상청구권을 기각한 사유에 따르면, 이들 기업주도 ‘국가의 수감자를 관장하는 보조기구’였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연구를 통해 이 강제노동자를 고용한 사기업들의 책임 소재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왜냐하면, 역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강제노동자를 사기업에 ‘강제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그 값싼 노동력을 탐내 자청해서 그들을 고용했던 예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말기에 젊은이들이 모두 전선에 나가면서 거의 모든 기업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고용원 수의 절반을 넘었던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해당하는 일이었다.

서독의 재판소가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요구를 기각시킨 또 하나의 법적 사유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나치의 ‘전형적인’ 박해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가령 어떤 폴란드 노동자가 전쟁 중에 체포되어 독일에 끌려와 강제노동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강제로 끌여온 부당한 행위의 핵심적인 원인은 나치의 ‘전형적인 박해’가 아니라, 단지 ‘노동력 부족’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SS가 강제수용소에 있었던 수감자를 일터로 내보낸 행위는, 그를 수감자로서가 아니라 ‘군수산업에 필요한 숙련노동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을 나치정권의 부당한 ‘박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이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독일 연방배상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시각 역시 역사연구로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강제노동자나 강제수용소 수감자가 민간기업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강제노동자 배상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상에 적극적이었던 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은 배상을 완강히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 몇몇 대기업(예를 들어, 크롭·지멘스·AEG 등)은 보상을 하긴 했지만, 이때 기업들은 이 보상이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상은 강제수용소 수감자 출신의 노동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노동수용소’에 있었던 민간인 강제노동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한참 후인 1985년 강제노동자 배상 문제가 서독에서 다시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 가령 풍뎅이 차로 유명한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간인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과거청산에 나섰다. 이

런 예외를 제외하면, 민간인 강제노동자는 이후 한동안 역사에서 그 존재가 완전히 잊혔다. 특히 구소련에서는 이들 강제노동자는 보상의 대상자가 되기는커녕, 대부분 나치에 협력한 ‘배반자’라는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4. 전환: 희생당한 고통을 위한 ‘인정투쟁’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우선 지속적인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있었다. 68운동 이후 후속세대는 미흡했던 나치청산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나치의 박해를 받았지만 보상받지 못했던 ‘잊힌’ 소수자 피해자(장애자, ‘진티와 로마’(집시), 동성애자)에 대한 보상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유럽 의회와 서독 내에서 녹색당이 이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었던 결과가 아니라, 나치라는 불법적인 정권의 결과로 점차 인식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배상 요구의 주된 근거가 바뀌었다.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그저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불법 정권에 희생된 ‘고통’을 보상으로나마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는 그저 단순한 임금체납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정권에 희생당한 고통의 ‘인정투쟁’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공론화에 새로운 전기는 물론 독일 통일과 냉전의 종식이었다. 우선 독일 통일은 보상 문제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앞두고 동서독이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2+4협약(Zwei-plus-Vier-Vertrag)에 조인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평화협정에 준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런던채무협약의 전제조건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우려 독일 정부는 구소련 국가 및 폴란드와 협정을 체결하여 15억 마르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금 가운데 5억 마르크를 나치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쓰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로써 개인의 법적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자의 배상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여기에 동구의 강제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배상 요구가 독일 내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동구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들 국가에 있었던 나치 피해자는 통일 독일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었으며, 과거에 대한 기억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일종의 붐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문서고 사료가 공개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에 관한 연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나치의 만행이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동구의 나치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에 직접 보상을 호소하면서, 독일 내에서 시작된 희생에 대한 인정투쟁이 이제 동구의 나라로 확대되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이들 동구의 나치 피해자 대부분이 연금생활자의 나이가 되었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점에 직면하면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압력도 크게 받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모두 ‘자연사’할 나이

에 도달했기 때문에, 배상이 그만큼 더 시급했다.

하지만 법적인 소송을 통한 해법은 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청구권 개시 시점 등 법률적 해석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한 증거와 국가의 책임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1990년대 강제노동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재판이 열렸지만, 이들 판결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언론이 주목하면서, ‘역사적 해결’에 대한 압력이 되기는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있던 과거 나치 전범 기업의 지점에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게다가 나치시대 때 기업가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여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 공세도 수위를 높여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97년에 불거진 스위스 은행의 문서 유출 사건이었다. 그러자 이 은행은 논란 끝에 1998년에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22억 마르크로 ‘정의기금’을 만들어 보상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나치시대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이 문제는 법적인 차원을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독일 정부와 기업가는 더 법률적 판단의 뒤에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그동안 독일의 정치적 지형도 변화했다. 1998년에 16년간 정권을 잡고 있던 콜 수상의 기민당/기사련 및 자유당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기민당/기사련과 달리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양 정당은 연립정부의 출범 이후 연방정부와 기업이 강제노동자들의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세우는 데 쉽게 합의했다. 슈뢰더(Schröder) 총리는 이후 이 문제를 직접 관장하여 주요 대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배상금을 부담하도록 종용하고 나섰다.

독일 대기업도 곧이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선 미국 내에서 독일 대기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뱅커스 트러스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뉴욕 시의회는 그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관계기관에 압력을 가했다. 벤츠사, 베르텔스만사와 같이, 미국계 기업과 합작하거나 기업을 인수한 독일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치와 관련된 소송이 일단 제기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어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도 여기에 한몫 작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 주력 기업들은 직접적인 보이콧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미국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그 여파가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9년 2월 독일 굴지의 보험회사, 은행 및 대기업들(도이치방크, 드레스드너방크, 알리안츠, 다이플러크라이스-벤츠, 지멘스, 바이어, BMW, 폴크스바겐, 티센-크룹, 베르텔스만, BASF 등)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도 몇 차례 난항을 겪긴 했지만, 2000년 3월에는 약 1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8월에 의회는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할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재단을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 경제계가 요구한 법적인 안전장치, 소송이 이후 제기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도 수용되었다.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기억과 미래(Erinnerung und Zukunft)’

라고 하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주로 강제노동자와 나치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이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게 하는 행사를 마련하거나, 피해국과 가해국 사이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희생자 유가족 및 제2세대의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다.

당시 독일 대통령 라우(Johannes Rau)는 1999년 12월 17일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노예노동자와 강제노동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그는 이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강제연행, 불법행위,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보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사죄의 변을 내놓았다. 물론 이 물질적 보상이, 강제노동자가 나치정권의 가혹한 탄압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치유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들이 전후에 현실적인 법적 논리만 앞세우는 독일 정부와 이 문제를 금기시하는 여론에 가로막혀 반세기가 넘도록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기나긴, 또 다른 정신적 ‘강제노동’에 시달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맺음말

정리하자면,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역사적 청산’이다. 1990년대에 독일에서 강제노동자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만 보면, 미국의 개입, 유대인의 협상, 냉전 종식 후 통일 독일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뒤늦게나마 결실을 보고 가해국과 피해국이 함께 미래를 여는 데 서로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이 독일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외교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차원, 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강제노동자 문제가 외교적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긴 것이 아니라 통일 독일의 정체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다.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이 유럽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독일이 나치 피해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부터 서독에서 시작되었다. 콜(Helmut Kohl) 수상이 이끄는 보수적인 정부하에서 나치청산은 분명 갈림길에 있었다. 서독 정부는 ‘나치청산의 종결’이라는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후속세대의 여론은 이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사와 일상사 등 새로운 연구방법은 나치의 역사상을 바꾸었다.

이에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나치청산에 대한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잊힌’ 피해자를 찾아내는 등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자의 보상 문제는 단순히 밀린 임금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정권에 희생당한 사람의 ‘고통’을 보상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이 보상 문제가 역사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의 해결방법은 역사적 차원을 고려한 해결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해결은 과거의 희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 해결책은 체불임금의 정의회복이 아닌 강제노동 자체의 철폐라는 정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세대의 의지표현이 되었다. 이는 ‘자유로운 노동’ 혹은 ‘노동의 자유’를 위한 후세대의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요약문>

강제노동자에 대한 독일의 배상과 보상 정책

송충기 (공주대)

2000년 독일정부는 강제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뒤늦고 미흡한 것이지만 오래 끌어왔던 난제를 해결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일견 여러 법적 소송, 미국의 개입, 유대인 대변인의 활약 등이 작용한 일종의 정치·외교적 타협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에서 강제노동자 문제가 해결된 것은 협상 당사자가 이 배상 문제를 나치의 불법적인 정책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강제노동자의 밀린 임금을 둘러싼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권에 희생당한 사람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행위였다. 그렇기에 물질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희생당한 고통에 대한 공식적이고 진정한 사죄가 뒤따랐다. 또한, 후속세대에게 강제노동에 관한 역사연구와 기억을 전하기로 합의한 것도 강제노동 자체를 역사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